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구내식당 연장운영 협약서(안)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인한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공사 기간동안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구내식당을 활용 대체식당으로 운영함에 있어, 아래 관리 기관 및 운영업체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재)서울산업진흥원 애니메이션센터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재)서울산업진흥원(이하 “애니센터 운영자” 이라고 한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관리자” 라고 한다)와 (주)한화 호텔&리조트(이하 “구내식당 운영자”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애니센터 운영자” 가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함에 있어 “애니센터 운영자” 와 “관리자”와 “구내식당 운영자”(이하 “상호간” 이라한다)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물의 표시)

구분	애니메이션센터
위치	서울 중구 소파로 126
규모	226.88㎡(130석)

### 제3조(운영기간)

- ① 운영기간은 2018년 2월1일(운영개시일) 부터 2018년 5월 31일(운영만료일)까지 4개월로 한다.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는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운영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서울시(공공재생과)로부터 연장요청 공문을 접수, “애니센터 운영자”는 요청사항을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운영범위)

- ① “애니센터 운영자” 는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가 구내식당 이용자에게 식음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시설 등(이하 “구내식당시설” 이라 한다)을 제공하며, “구내식당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애니센터 운영자” 가 제공하는 구내식당시설의 내용에 대하여는 “애니센터 운영자” 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식재료를 구입·조리·가공한 식음료의 구내식당 이용자에게 제공

나. 식권판매 · 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 · 관리

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채용, 종업원의 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소독 등 청결유지, 위생 감사 수감 등 구내식당 운영전반에 관한사항

②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는 목적물을 구내식당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내식당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신의성실)** “애니센터 운영자”와 "관리자"와 "구내식당 운영자"는 운영이행을 위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구내식당 운영자의 의무)

① "구내식당 운영자"는 구내식당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내식당 운영자"는 종업원의 농성 · 파업 등으로 식음료 제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내식당 운영자"는 인도 받은 “애니센터 운영자”의 집기 및 비품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 · 관리 하여야하며, “애니센터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재물조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내식당 운영자"는 급식제공을 위하여 운영기간동안 “애니센터 운영자”에서 설치한 주방 기구 및 집기·비품, 추가소요시설이 필요할 경우 "운영자"의 부담으로 구입 설치하여 식당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구내식당 운영자"는 구내식당시설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애니센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애니센터 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구내식당 운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선 · 보충하여야 한다. "구내식당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일상적인 급 · 배수, 냉 · 난방, 전기 등의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애니센터 운영자"가 시행한다.

⑥ "구내식당 운영자"는 “애니센터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구내식당의 구조변경, 시설의 개 · 보수 및 집기 등의 구입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서울시 해당부서(공공재생과)가 부담한다.

⑦ 구내식당의 운영기간 중 "구내식당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보관 · 관리하는 집기 및 비품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애니센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구내식당 운영자"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 · 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일체를 "구내식당 운영자"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⑨ "구내식당 운영자"는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위생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⑩ 구내식당시설의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애니센터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애니센터 운영자”는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⑪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는 구내식당 운영기간 중 "애니센터 운영자"의 관리운영 규정과 건물관리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등 비용분담)**

- ① "애니센터 운영자"는 "구내식당 운영자"가 사용하는 구내식당시설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운영 기간동안 면제한다.
- ② 경비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경비 부담기준에 없는 사항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진 흥 원	운 영 업 체
기본주방설비 유지보수비 임 대 료	인 건 비 식 재 료 비 운 영 경 비 방역소독비 배식판 등 집기

**제8조(인력관리)**

- ① 구내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는 "구내식당 운영자"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구내식당 운영자"가 부담한다.
- ② "구내식당 운영자"의 종업원 중 "애니센터 운영자"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구내식당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구내식당 운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애니센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구내식당 운영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⑤ 위호 제3항, 제4항 및 제9조 제1항·제2항의 경우 "애니센터 운영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 "구내식당 운영자"는 "애니센터 운영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구내식당 운영자"는 "구내식당 운영자"의 종업원에게 일정한 제복 및 명찰을 착용시켜야 하며, 봉사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을 항상 지휘, 감독, 교육하여야 한다.
- ⑦ "구내식당 운영자"는 채용한 직원 또는 종업원의 신분사항을 "애니센터 운영자"에게 상세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구내식당 운영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식사관리를 위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조리원)를 상시 근무시켜야 한다.

**제9조(위생 및 안전관리)**

- ① "구내식당 운영자"는 본 운영상의 구내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구내식당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발생시 "구내식당 운영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구내식당 운영자"는 “애니센터 운영자”가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내식당 운영자"의 책임하에 부상자 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전액을 "구내식당 운영자"가 부담한다.

③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제10조(관리책임자 지정등)

① “애니센터 운영자”는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하고,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구내식당 운영자"의 대표자와 식당 운영업무 사항에 대하여 수시연락 또는 협의할 수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자"가 행하는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② "구내식당 운영자"는 종업원의 감독 및 지시를 위해 “애니센터 운영자”가 동의하는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대표자는 "구내식당 운영자"를 대리하여 제반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1조(권리이양, 전대등의 금지)

①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은 제3자에게 본 운영상의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②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는 “애니센터 운영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케 할 수 없다.

## 제2장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급식수준 및 식단)

① 급식수준 및 식단은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 상호간에 체결된 운영계획에 의거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 제13조(급식시간)

① 구내식당의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구내식당 운영자"는 정해진 시간중에는 반드시 배식을 하여야 한다.

구 분	조식	중 식	간 식
연중무휴	07:10~08:30	11:00~13:30	17:00~19:00

① 간식은 식사 시간 이외의 시간에 판매하며, 행사식은 사전의 협의에 의한 시간으로 한다.

② "구내식당 운영자"는 휴무할 경우는 “상호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급식단가)

① 급식단가는 상호간 합의로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식 구분	직 원 식	외 부 식	비고
급식단가	3,700원	4,300원	(조·중·석식 동일)

※ 1회 30장 이상 구매 시 3,500원/장 적용.

## 제4장 기타사항

### 제15조(협약내용 개정 등)

① 이 협약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경우 “애니센터 운영자”와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가 상호합의하에 필요한 개정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운영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규칙 및 일반관행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운영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애니센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구내식당 운영자”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경매신청이 있거나 “구내식당 운영자”가 파산·회사 정리 절차·청산에 들어간 경우

나. “구내식당 운영자”가 본 운영조건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애니센터 운영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계획적으로 방해하였을 경우

라. “구내식당 운영자”가 위생상의 문제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마. “구내식당 운영자”는 운영기간 중 3회 이상 “애니센터 운영자” 및 “관리자”로부터 구내식당 위생 상태 및 사전 협의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인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받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는 경우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영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상호간 합의한 경우

사. “애니센터 운영자”의 사정으로 식당을 폐쇄하거나 용도변경 할 경우

아. 관할 구청의 행정 처분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의거 운영을 해지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애니센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③ 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 해당부서(공공재생과)의 공문을 통해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애니센터 운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산반환 조치)

① 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영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는 제공받은 구내 식당시설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가 지체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니센터 운영자"는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보안관리) "구내식당 운영자"은 구내식당관리에 따른 시설 및 종업원의 신원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19조(분쟁 및 소의 관할)

① 본 운영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애니센터 운영자"와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는 상호신뢰와 공평의 원칙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애니센터 운영자"와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애니센터 운영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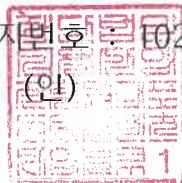
② 본 운영과 관련된 법적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애니센터 운영자"가 운영하는 장소 내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효력) 이 운영의 효력은 기명일로부터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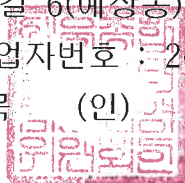
본 협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애니센터 운영자"와 "관리자" 및 "구내식당 운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2월 | 일

애니센터 운영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재)서울산업진흥원(사업자번호 : 102-82-09623)  
대표이사 주 형 철 (인)



관리자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예장동)  
서울종합방재센터(사업자번호 : 201-83-00377)  
소장 이 성 목 (인)



운영자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 호텔&리조트(101-81-30747)  
대표이사 김 태 호 (인)

